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8
----------	-----

제출년월일 : 1998. 6. 10.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비합리적인 용어 및 서식등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완 조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상위법령과 불일치 및 비합리적인 용어개선 보완(안 제2조제1.2.5호, 제5조제1항)
-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대출한도액과 상환조건을 정비(안 제6조 및 별표3)

3. 근거법령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3조, 제36조

4. 입법예고 : 입법예고 불필요

5. 분 문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환경개선'을 '주거환경개선'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산업용 전력공급 기업'을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으로 하며,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용자하는 자금'을 '당해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여 용자하는 자금'으로 한다.

제2조제5호중 '지원법 제10조3항 및 동법시행령21조4항'을 '지원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주민 또는 기업,'을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용자한도 및 용자조건)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대출 한도액과 상환조건은 「별표 3」의 기준으로 용자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대여약정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고성군 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u>환경개선</u>,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용자하는 자금을 말한다</p> <p>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고성군 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설립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u>전력공급기업</u> 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u>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용자하는 자금</u>을 말한다.</p> <p>3~4호 생략</p> <p>5. <u>지원법제10조3항 및 동법시행령 21조 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용자대상</u>에 있어 '1인당'이라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 - - - -</p> <p>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 - - - -</p> <p style="text-align: right;">- - - - - 주민의 소득증대, <u>주거환경개선</u>,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p> <p>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 - - - -</p> <p style="text-align: right;">- - - - - <u>전력을 공급받는 기업</u>, 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u>당해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여 용자하는 자금</u>을 말한다.</p> <p>3~4호 현행과 같음</p> <p>5. <u>지원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의</u> - - - - -</p>

현행	개정												
<p>제5조 (용자대상주민 및 기업확정) ①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고성군에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 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u>주민 또는 기업</u>, 다만, 용자대상자 확정후 해당 용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용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②생략</p> <p>제6조 (용자한도 및 용자조건)</p>	<p>제5조 (용자대상주민 및 기업확정) ①지원법에 의한 - - - - -</p> <p>- - - - -</p> <p>- - - - -</p> <p>-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u>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u> 다만, 용자대상자 확정후 - - - - -</p> <p>- - - - -</p> <p>- - - - -</p> <p>- - -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6조 (용자한도 및 용자조건) <u>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대출 한도액과 상환조건은 「별표3」의 기준으로 용자한다.</u></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164 922 305 1015">구분</th> <th data-bbox="305 922 478 1015">대출한도액</th> <th data-bbox="478 922 588 1015">대출이자율</th> <th data-bbox="588 922 796 1015">상환조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64 1015 305 1138">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td> <td data-bbox="305 1015 478 1138">1인당 500만원 이내</td> <td data-bbox="478 1015 588 1138">연 3%</td> <td data-bbox="588 1015 796 1138">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td> </tr> <tr> <td data-bbox="164 1138 305 1267">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td> <td data-bbox="305 1138 478 1267">기업당 2,000만원 이내</td> <td data-bbox="478 1138 588 1267">연 3%</td> <td data-bbox="588 1138 796 1267">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td> </tr> </tbody> </table>	구분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조건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	1인당 500만원 이내	연 3%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연 3%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구분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조건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	1인당 500만원 이내	연 3%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연 3%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p><u>별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 대여약정서"</u></p>	<p><u>별지 삭제</u></p>												

[별표 3]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한도 및 용자조건

구 분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 환 조 건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1인당 500만원이내	연 3%	5년이내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연 3%	5년이내 (2년거치 3년분할 상환)